아이돌봄 서비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콘텐츠는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정부 비용 지원 방법을 안내하며, 아이돌봄사 자격증 제도에 관한 법령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
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4
1.1. 서비스 알아보기 4
1.1.1. 서비스 개요 등 4
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10
2.1. 지원 기준 및 서비스 신청 10
2.1.1. 정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10
2.2. 이용요금 등 13
2.2.1.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신청 13
2.2.2. 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17
2.3. 이용제한 및 취소 19
2.3.1. 서비스 이용제한 및 취소 기준 19
3. 지역 특화 돌봄 지원 22
3.1. 지역별 돌봄 지원사업 22
3.1.1. 돌봄 센터 등 22
4.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기 26
4.1. 아이돌봄사 되기 26
4.1.1. 직무 및 자격 요건 26
4.1.2. 자격 취득 절차 27
4.2. 아이돌봄사로 일하기 36
4.2.1. 취업 및 활동 36
4.2.2. 자격정지·취소 및 벌칙 등 42

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1.1. 서비스 알아보기

1.1.1. 서비스 개요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

아이돌봄 지원 목적

▪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 국가와 지방정부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이돌봄을 지원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성평등가족부『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9쪽, 71쪽부터 84쪽까지 참조).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② 돌봄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병원 이용 시 동행,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동행 ③ 이른둥이 특례: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의 이른둥이는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1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추가 지원 ※ 다만, 특례기간 중 서비스 유형을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특례 종료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고,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② 돌봄 범위: 가. 기본형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식 챙기기(조리 등은 불가하고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돌봄 사항 병행 나. 종합형 •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등) ※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 불가 다.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이용(22시~다음 날 06시는 야간형 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아동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② 돌봄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① 돌봄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② 돌봄 범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Q. 9세, 11세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네, 2025년 3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28.),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및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참조>

▪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돌봄 시간 중에 12세 이하의 다른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신청 시간은 추가 아동 1인당 1시간 이상으로 해서 신청 가능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0쪽).

▪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봄사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봄사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0쪽).

※ 이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신청 전 사전 준비

▪ 아이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후 유형을 나누며, 유형별로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 참조].

1. '가~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

절차	내용
정부 지원 신청 및 접수(필수)	• 정부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가~라'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결정 통지 후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 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됨(부모 급여 금액이 큰 경우, 영아종일제 사용액 차감 후 지급)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가~라'형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동은 대기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예치금 충전(필수)	• 충전 방법 1) 국민행복카드 결제: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2) 가상계좌 입금: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3) 돌봄 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 적립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단기서비스는 즉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2. '마'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구

절차	내용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마'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2.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동은 대기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3. 예치금 충전(필수)	• 충전 방법 1) 국민행복카드 결제: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2) 가상계좌 입금: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3) 돌봄 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 적립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단기서비스는 즉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준비가 끝난 가구는 서비스 신청 방식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서비스 이용-서비스 신청안내 참조]

서비스 신청 방식별 신청 방법		
정기서비스	서비스 내용	• 가입한 회원 중 소득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이 이용 가능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이용일의 전월 11~25일 및 당월 1~25일(이용 당일 신청 불가) 신청 아이돌봄사 연계: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 서비스 이용: 신청 일정에 서비스 이용
단기서비스	서비스 내용	•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단기연계 방식의 서비스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서비스 신청 일시적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한 없음 ※ '마형'은 승인 필요 2. 아이돌봄사 연계: 아이돌봄사가 수락한 단기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요청 시 동일한 날짜 신청 불가 3. 이용요금 결제: 아이돌봄사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즉시 차감 4. 서비스 이용: 신청 일정에 서비스 이용
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일반 단기서비스: 4시간 전) 아이돌봄사 연계: 아이돌봄사가 수락한 단기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 후 30분 이내에 수락한 돌봄사가 없으면 신청 취소 이용요금 결제: 아이돌봄사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즉시 차감(이용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건당 3,000원의 추가 비용 지불 필요) 서비스 이용: 신청 일정에 서비스 이용

※ 그 밖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2.1. 지원 기준 및 서비스 신청

2.1.1. 정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동 연령, 양육공백 및 소득 기준

대상 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각 서비스별로 다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0쪽).

구분	대상	비고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 다만,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중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용 가능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아이돌봄사·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합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0쪽).

양육공백 확인 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지 확인하며,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1쪽 참조).

구분	인정 기준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다만,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함 • 출산휴가 중인 사람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미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같은 지침 기준에 따른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그 밖에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밖의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은 추가로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3쪽).

▹ 부 또는 모의 질병(보건복지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참조)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인정.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 중복금지 기준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나.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 불가

※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9시~6시/ (유치원) 평일 9시~13시

• 중복금지 기준 예외

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나. 위 가.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다.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라.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 또는 공문(지방정부, 교육청 등) 확인

사.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아.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출처: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4쪽 및 45쪽 참조>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 유형이 정해집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1쪽 및 22쪽 참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 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4,020	4,872	5,668	6,417	7,137	7,856
나형	120% 이하	6,431	7,794	9,069	10,268	11,419	12,570
다형	150% 이하	8,039	9,743	11,336	12,834	14,273	15,712
라형	250% 이하	13,398	16,237	18,892	21,390	23,788	26,186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가정위탁아동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8쪽).

> ※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51쪽부터 5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7쪽 및 48쪽).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 낮은 소득액만큼 경감 처리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 휴직(육아, 질병 등)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2.2. 이용요금 등

2.2.1.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신청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21쪽 참조).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기본형	종합형		
12,790원	12,790원	16,620원	15,340원	19,530원

정부 지원 금액

정부 지원 범위

▪ 국가와 지방정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참조).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6,620원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6,620원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6,620원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6,620원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340원	13,040원	2,300원	12,272원	3,06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340원	9,204원	6,136원	7,670원	7,67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마형	250% 초과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정부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2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다음의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의 신용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의 보험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또는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야간 및 휴일 할증

▪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22시~다음날 0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참조].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참조].

※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이용금액은 12,790원+6,395원+6,395원=25,580원(두 번째 아동 50%, 세 번째 아동 50% 감액)

다자녀가구 추가할인

▪ 중위소득 250% 이하(가,나,다,라형)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참조].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참조].

인구감소지역 추가할인

▪ 다음의 인구감소지역의 가구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행정안전부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추가할인

▪ 소득유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정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닌'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4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이용제한 및 취소

2.3.1. 서비스 이용제한 및 취소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제한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54쪽 참조).

이용 제한 사유	이용 제한 기간
• 연간 3건 이상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간 3회 이상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아이돌봄사 업무 범위가 아닌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 월 3건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다만,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으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해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 한 경우 • 연간 3회 이상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인계 없이 보호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1개월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하지 않은 시간에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3개월
•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1년간 누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발생일 기준)	6개월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사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1년 이내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시까지 이용 제한	납부 시까지

서비스 취소 기준

유형별 취소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용계약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6쪽 및 서식 제5호 참조).

구분	내용
취소 방법	• 서비스 연계 후 아이돌봄사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근하거나 이용자의 사정(휴가,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사가 휴무하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최소 3일 전 미리 통보(결근 기간의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음)
취소 수수료	당일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다음의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함(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불가)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12,790원*기 연계시간*50% (다만, 최소부과액은 12,790원) •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 미만으로 이용 시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 부담
취소수수료 면제	•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 면제

▪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6쪽부터 69쪽까지 참조).

구분	내용
취소 방법	• 서비스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를 통해 취소(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 ※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할 경우, 신청자는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으로 취소 요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처리 후 이용가정과 아이돌봄사에게 통보(문자 등)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함 1)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부과 2)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건당 12,790원*기 연계시간*50%(다만,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서비스 시작 이후 서비스 취소·단축은 불가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신청 시간에 대한 요금 이용자 전액 부담
취소수수료 면제	• 단기서비스: 아이돌봄사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면제(다만,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수수료 면제는 월 3건 이내로 제한함) •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시 면제 • 아동의 4촌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시: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시 면제 •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 면제 •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사유: 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 시 면제
월 취소 제한	• 연계 이전은 해당 없음, 연계 이후 취소 건에 한하여 적용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다만,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했으나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3건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단기서비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신청 시 월 취소 이용 제한 건수(월 3건, 1개월 이용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3. 지역 특화 돌봄 지원

3.1. 지역별 돌봄 지원사업

3.1.1. 돌봄 센터 등

※ 아래 지역별 지원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 제공되는 정보로, 다른 지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센터 운영 등

다함께 돌봄센터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대구광역시 대구아동돌봄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adongdolbom/index.do)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참조].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	• 돌봄 방식: 정기돌봄(한 달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이용), 일시돌봄(학교 휴업 및 공휴일, 긴급사유 발생 등 비정기적 이용) • 운영시간: 학기 중(13:00~20:00), 장·단기 방학 중(09:00~18:00) • 이용요금: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이용료 상이(급·간식 제공 시 월 5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신청 방법: 희망하는 센터에 돌봄 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 주요 센터 현황은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umppa.seoul.go.kr/icare/)-초등돌봄-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확인 가능
대구광역시	• 돌봄 방식: 정기돌봄(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 운영시간: 학기 중(14:00~19:00), 방학 중(12:00~17:00) • 이용요금: 무료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접수 ※ 주요 센터 현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분야별정보-여성·가족·교육-아동-다함께 돌봄센터에서 확인 가능
대전광역시	• 돌봄 방식: 상시돌봄(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일시돌봄(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 긴급 사유로 인한 일시 돌봄은 센터 이용아동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유치원생 등 미취학 아동도 이용 가능하나, 맞벌이가정(취업한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등으로 이용 우선순위가 부여됨 • 운영시간: 학기 중(10:00~19:00), 방학 중(09:00~18:00) • 이용요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 급·간식 제공 시 추가 이용료 부과 • 신청 방법: 대전아이 홈페이지(https://www.daejeoni.or.kr/dolbom/)-맞춤형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선택 후 원하는 기관에 전화문의 또는 대전아이 원스톱 예약 신청 후 상담 진행 ※ 주요 센터 현황은 대전아이 홈페이지(https://www.daejeoni.or.kr/dolbom/)-돌봄MAP-돌봄기관-맞춤형서비스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검색 후 확인 가능

대구광역시 방과 후 틈새돌봄

▪ 대구광역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다만, 저학년 아동 우선 돌봄)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방학 중, 야간·토요돌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대구광역시 대구아동돌봄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adongdolbom/index.do)-아동돌봄 정보-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 참조]

구분	내용	비고
이용대상	• 대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저학년 아동 우선 돌봄)	-
이용시간	• 정기돌봄(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1일 30분~3시간, 방학 중 최대 6시간(2주 이상/3시간 이상/3일 이상) • 일시돌봄(학교 수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1일 30분~3시간, 방학 중 최대 6시간(주 1회/월 2~3회/연 10회) ※ 틈새돌봄의 이용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센터별 야간 돌봄, 토요 돌봄 운영 다를 수 있음
이용요금	• 대구광역시 보조금 100% 지원(프로그램비 및 급·간식비 일부 이용자 본인 부담)	
신청 방법	• 대구광역시 위탁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http://www.dgicare.co.kr/html/main.html) 홈페이지에서 틈새돌봄 신청 ※ 주요 센터 현황은 대구광역시 위탁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http://www.dgicare.co.kr/html/main.html) 홈페이지-틈새돌봄-우리동네 돌봄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	

부산광역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

▪ 부산광역시에서는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여성·가족-가족지원정책-아이돌봄지원사업-입원아동돌봄서비스 참조]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3개월~12세 이하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제공 시간	• 07:00~22:00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 아동 1인, 연 100시간 한도
이용 내용	• 입원 아동 복약,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 부담) ※ 소득기준별 유형 및 부산시 지원 비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여성·가족-가족지원정책-아이돌봄지원사업-입원아동돌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등급판정 후 수행기관에 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작성 및 제출

4.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기

4.1. 아이돌봄사 되기

4.1.1. 직무 및 자격 요건

아이돌봄사 직무

"아이돌봄사"란?

▪ "아이돌봄사"는 다음에 해당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함)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사람

아이돌봄사의 직무

▪ 아이돌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2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 시 주의의무

▪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4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 직무 외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으며, 등록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1.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범죄경력 조회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아이돌봄사 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자격전담팀(☎ 1577-9386) 또는 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자격 취득 절차

아이돌봄사 자격취득 흐름도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흐름도]

단계	절차		주체
1단계 (교육수료)	교육 신청	•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 ※ 전국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 참고	희망자
	교육 수료	• 교육유형에 따라 해당 과정 수료 * 표준교육과정(120시간/대면):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 단축교육과정(40시간/대면):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직무연수과정(16시간/비대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희망자
	수료증 발급	• 수료 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표준교육과정 및 단축교육과정: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장 발행 * 직무연수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발행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자격관리 전담기관
2단계 (자격신청)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수료증, 건강검진 결과서 등 서류 등록	희망자
3단계 (자격검정)	자격검정	• 제출 서류 검토, 결격사유 조회	자격관리 전담기관
4단계 (적성·인성 검사)	적성·인성 검사	• 온라인 적성·인성 검사 실시	희망자
5단계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 온라인(PDF) 출력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자격관리 전담기관 /희망자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7쪽>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의 이수

표준교육과정(120시간)

▪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2항 본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해	3	3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제	2	2	
		아이돌봄 이용 가정의 특성	3	3	
	아이돌봄 역할	아이돌봄의 직무	3	3	
		아이돌봄의 직업윤리	2	2	
	소계		**13**	**13**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3	3	
		영아 신체돌봄1: 영양	3	3	
		영아 신체돌봄2: 수면·배변·청결	3	3	
		영아 정서돌봄	3	3	
		영아 놀이지원	3	3	
		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영아 돌봄의 실제	3	3	
	유아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3	3	
		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3	3	
		유아 놀이지원	3	3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3	3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1: 신체 돌봄	2	2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2: 생활시간관리	2	2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2	2	
		다양한 가족 이해와 소통	2	2	
	소계		**47**	**47**	

III.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2	2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3	3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3	3	
		긴급상황 및 재난 대응	2	2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	3	3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	3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2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	3	3	
	장애의 이해와 돌봄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2	2	
		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3	3	
		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3	3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권리의 이해와 돌봄	2	2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3	3	
		아동학대 예방 실무	3	3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3	3	
	소계		**40**	**40**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IV. 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2		2
	현장실습	가정보육시설 또는 아이돌봄 가정	16		16
	사후멘토링	실습 사후컨설팅	2		2
	소계		**20**	**0**	**20**
전체			**120**	**100**	**20**

단축교육과정(40시간)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와 다음과 같은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는 교육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2026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4쪽 및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 아동양육관련 분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는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영)유아, 아동, 보육' 단어가 포함되면 인정함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이해 및 직업윤리	1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제	1	1	
	소계		**2**	**2**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돌봄	영아발달의 이해	1	1	
		영아돌봄: 수유지원	1	1	
		영아돌봄: 식사 및 간식지원	1	1	
		영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1	1	
		영아 신체돌봄: 청결·위생지원	1	1	
		영아 정서 돌봄 및 지원	1	1	
		영아 놀이지원	1	1	
		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1	1	
	유아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1	
		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1	1	
		유아 놀이지원	1	1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1	1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돌봄의 실제	1	1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 생활시간관리	1	1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1	1	
	소계		**15**	**15**	

III.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1	1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놀이·수면 공간의 안전	1	1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일상 공간의 안전	1	1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1	1	
		긴급 상황 및 재난 대응	1	1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	1	1	
		응급처치 실습	1	1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	1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	1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	1	1	
	장애의 이해와 돌봄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1	1	
		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1	1	
		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1	1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1	1	
		아동학대 예방 실무	1	1	
		긍정양육 원리	1	1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실천	1	1	
	소계		**17**	**17**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육과정**	**실습**
IV. 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1		1
	현장실습	현장실습	4		4
	사후멘토링	실습 사후컨설팅	1		1
	소계		**6**		**6**
전체			**40**	**34**	**6**

직무연수과정(16시간)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6시간의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보육교사 1급 자격자 제외)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자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함) 정교사 1급 자격자 제외]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해 및 실제	1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특성 및 양육자와의 소통	2
	아이돌봄 역할	아이돌봄의 직무 및 직업윤리	1
	소계		**4**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영아 신체돌봄	1
		영아 정서돌봄	1
		영아 놀이지원	1
	유아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유아 놀이지원	1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행동지원	1
	소계		**8**
Ⅲ.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1
		아동권리의 이해와 돌봄	1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학대의 신고 및 예방	1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1
	소계		**4**
전체			**16**

※ 아이돌봄사 교육 신청 방법 및 수강료

1. 표준(단축)교육과정

- 신청 기간: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른 수시 모집·공고
- 신청 접수: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으로 신청

신청 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교육 조회 및 신청·접수
본인 부담	개별 교육기관 신청

• 신청 절차: 본인 유사 자격 확인 → 교육 과정 신청(표준 또는 단축) → 교육 수료

• 교육수강료: 본인 부담 비용은 교육기관 카드결제 또는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구분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표준교육과정 (120시간)	90% 미리 본인부담(423,020원), 환급 기준 달성 시 전액(469,800원) 환급	100% 본인 부담(470,000원)
단축교육과정 (40시간)	90% 미리 본인부담(162,000원), 환급 기준 달성 시 전액(180,000원) 환급	100% 본인 부담(180,000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환급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환급됨(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 참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기준 달성(전체 교육일수의 80% 이상 출석)

√ 돌봄서비스직(육아) 관련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취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

※ 다만, 취업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

2. 직무연수과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신청 접수: KIHF 온라인교육플랫폼(www.edu.kihf.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대상자격 확인(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 KIHF 온라인교육플랫폼 회원가입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확인(아이돌봄사 직무연수과정/16시간) → 교육 신청 및 수료 → 수료증 출력(온라인 PDF)

• 교육수강료: 무료

<출처: 『2026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12쪽 및 13쪽 참조>

※ 아이돌봄사 교육수강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증 신청

자격증 신청 방법

▪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 한정) 정교사 1급]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적성·인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8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 그 밖에 위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제7조제7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2026년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22쪽부터 24쪽까지).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진을 말함) 1장
-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다만, 진단결과에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문구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직무연수과정 포함) 수료증
-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2. 아이돌봄사로 일하기

4.2.1. 취업 및 활동

아이돌봄사 취업

아이돌봄사 지원 및 선발

▪ 아이돌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아이돌봄사를 지원해 선발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아이돌봄사 채용 및 선발 내용 참조].

1. 지원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활동 희망자)

2.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3. 신청 기간: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의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 아이돌봄사 채용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청 시	1.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면접심사 통과 후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매년 제출해야 함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5. 선발 절차: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자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하고,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선발 기준: 아이돌봄사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봄사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음

아이돌봄사 활동 내용

▪ 아이돌봄사는 각 서비스 별로 다음의 아이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아이돌봄사 활동 참조].

구분	활동 범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다만,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 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 협의 필요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 협의 필요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당일 다른 가정 돌봄 활동 불가능(다만,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봄사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아이돌봄사 활동 시 의무사항

보수교육 이수

▪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기본과정 (8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	1
		아이돌봄의 직업윤리	1
		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성장	1
	아동발달의 이해	영아발달	1
		유아발달	1
		학령기발달	1
	아동존중과 인권·건강관리	아동의 안전	1
		아동의 건강	1
	소계		8
	영아돌봄	신생아 돌봄과 발달지원	1
		영아기 상호작용	1
		영아기 행동지원	1
		영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영아 종일돌봄 일과 구성 및 운영	1
		영아 발달지원: 감각놀이를 중심으로	1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1
		영아(0~2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계		8

유아돌봄	유아기 상호작용	1
	유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유아기 행동지원	1
	유아 신체놀이 실제	1
	유아 언어놀이 실제	1
	유아 미술놀이 실제	1
	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1
	유아(3~5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계		**8**

특화과정 (3개 분야 중 1개 과정 이수, 8시간)	사례중심돌봄	학대예방 (택 2)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1
			영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1
			유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상황별 돌봄 (택 6)	정기돌봄 운영과 대응	1
			단기·긴급돌봄 운영과 대응	1
			질병감염 아동 돌봄	1
			기관 내 돌봄 지원 실무	1
			학령기 상호작용	1
			학령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학령기 아동행동지원	1
			예술·탐구놀이 실제	1
			양육자와의 대화기술	2
			가족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협력	1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통과 협력	1
			아동 행동/발달 특성별 지원	1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지원	1
			아이 마음읽기와 회복력 지원	1
			응급상황별 현장사례 탐구	2
			안전한 외부활동과 이동 지원	1
	소계			**선택 8시간**

건강진단 실시

▪ 아이돌봄사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아이돌봄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돌봄 아동 안전 관리

▪ 아이돌봄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3호).

▪ 아이돌봄사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의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4.2.2. 자격정지·취소 및 벌칙 등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취소

자격정지 사유

▪ 아이돌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본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5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위반행위	자격정지 기간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6개월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단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5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위반행위	자격정지 기간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년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년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2년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1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1년

자격 취소 사유

- 아이돌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해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아이돌봄사 자격 여부의 확인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front/biz/guide)-정보마당-아이돌봄사 자격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관련 벌칙

징역 또는 벌금 사유

▪ 아이돌봄사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제2항제7호).

과태료 부과 사유

▪ 아이돌봄사가 다른 사람에게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8조, 제37조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제2호가목).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